

Ⅲ. 한국판례의 검토

글·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리

1) 제조물책임인정 사례

① TV 폭발사고와 제조물책임 인정 판례 1

(속초지원 94가합 131)

다방에 설치한 TV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던 종업원이 질식사망했다. 유족이 TV 제조회사를 상대로 TV 제조상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TV 폭발의 구체적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TV는 絶緣性이나 耐久性 劣後한 부품 사용이나 부품의 부적합한 組立·配置로 그 브라운관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이용 상황에서 TV가 폭발한 경우 그 TV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전성을 缺如한 제품이 된다고 TV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례는 정황에 의해 결함을 추정한 데 의의가 있다.

② 冷蔵庫 사고와 製造 및 設計上 缺陷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冷蔵庫를 구입하여 사용 중, 어느날 토닉워터 병을 冷蔵庫의 旋盤에 넣다가 冷蔵庫 선반의 부착부위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물병의 유리 조각에 宇眼角膜破裂상을 입어 角膜混濁이라는 後有障礙를 입었다. 그 후 원고가 冷蔵庫 제조회사를 상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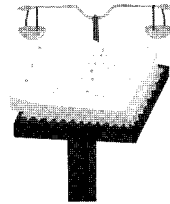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冷蔵庫 組立製造過程 過失이 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③ 경상사료사건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 2092판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해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 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 처분하기에 이른 사건에서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본 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이 현저하게 저하케 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이 제조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 제조업자의 불법행



위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해 사료상의 결합,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구제를 보다 두텁게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④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 2221판결)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마취제를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 가스 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본 건은 제조, 판매자로부터 제공된 표시·경고의 결합에 관한 판례로서 제조, 판매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표시·경고결함으로 인정되므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게되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⑤ 장난감주사기 결합 사건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 1772판결)

본 건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 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 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해 ‘펑’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으로, 원고는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 부분이 견고 하지 못하고 영성해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 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해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본 판례는 공산품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⑥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18139판결)

이 판결은 설계결함에 관하여 심도있는 판결이 유를 실시한 중요한 판례이다. 원고가 경영하는 연화광업소 내의 자체변전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 M.O.F.)에서 1987. 1. 17. 10:00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를 1차 폭발이라 한다) 위 광업소 소속 직원인 소외 망 A 및 소외 B 등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일단 불길을 잡은 뒤, 같은 날 10:15경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위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이하 이를 2

차 폭발이라 한다) 위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 A와 위 B를 덮쳐 그들이 전선에 중화상을 입고 위 A는 같은 달 25일 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대법원은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기사용 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과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라는 부분은 이른바 합리적 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설계결합의 판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⑦ 삼성전자 칼라TV 화재사건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판결)

이 판결은 결합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하여 그동안의 판결을 집대성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딸이 1996. 7. 3. 12:00경 이 사건 주택의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전(VTR겸용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텔레비전에서 ‘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어 급기야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하였다.

위 사고는 텔레비전 수상관(브라운관)내의 전자총 부분(고전압이 걸려 있음)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이것으로서 원고는 화재발생 약 6년 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까지 사용하여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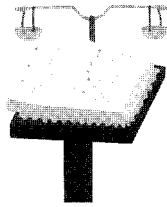
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약 5,6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텔레비전의 폭발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은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텔레비전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전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전의 제조업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⑧ 자동차급발진 사건

최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자동차급발진 사고에서 정황증거에 의하여 자동차결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사고차량의 시동을 걸자 자동변속기 레버가 주차 위치인 ‘P’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후진, 인도와 구분 짓기 위해 설치된 방지턱을 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돌아와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결함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전경력 30년 이상의 주차관리원의 조작상 과실이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 주행행적, 파손 정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볼 때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대우자동차급발진 집단소송에서 쉬프트록을 장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조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설계상 결함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제조업자는 사용자의 제조물에 관한 예견 가능한 오사용까지 고려하여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계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보고됨과 아울러 운전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미국 등에서 쉬프트록을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1994년 무렵에는 이미 쉬프트록은 충분히 그 제조원가가 금 3,500원 정도이므로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도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저해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쉬프트록은 앞서 본 효용과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당연히 그 설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쉬프트록을 1994년 이후에 생산하는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함과 아울러 제조업자로서의 결함 없는 제조물을 생산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이후인 1996년도에 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는 쉬프트록을 장착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제조물책임부인사례

① 採血瓶 사고

(대법원 76다 1269판결, 1976년 9. 14 선고)

병원에서 輸血과 함께 服關節轉置換術 수술 중 쇼크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採血瓶 제조회사를 상대로 採血瓶의 汚染過失을 근거로 한 제시한 소송에서, 법원은 採血瓶이 汚染과 채혈병의 製造缺陷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조자의 責任을 否認했다.

② 製造物 缺陷으로 인한 商品自體 損害와 營業 손실의 배상을 否認한 판례

(서울민사지법 86가합3450, 1987. 11. 11 선고)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공급한 참치원양어선을 이용하여 원양어업을 중 主汽權의 부품 결함으로 주기관의 다른 부품이 크게 마모되자 원양어업을 중단했다.

그 후 원고는 선박제조업자를 상대로 선박부품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엔진수리비용과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선박수리비는 제조물자체손해이고 영업손실은 瑕疵擔保責任의 대상이 될 뿐 제조물책임의 배상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③ 에어백(Airbag)에 製造物責任을 否認한 판결

(서울지법 96가합 32282, 1998. 2. 22)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조·판매한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 중 급커브길에서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도로를 離脫후 가로수와 화단벽을 衝擊한 사고로 운전하던 원고는 重傷害를 입고 조수석 탑승자는 사망했다. 그 후 원고는 사고당시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설치된 에어백의 缺陷과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信義側違反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에어백은 正面衝突과 30° 이내의 충돌에서만 작동하도록 設計되었는데 이 사고에서 차량의 충돌각도는 이러한 에어백의 작동범위를 벗어났으므로 缺陷이 없고 또한 차량 매도 당시 賣渡인이 에어백이 다른 회사의 차량에 설치된 것 보다 性能이 優秀하다고 말한 것만 가지고 賣渡인에게 信義側을 違反한 責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請求를 棄却했다.

④ 상품적합성 결여손해에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부인한 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 26593판결)

원고 회사는 피고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노래방 기기의 본체이다 10여 종의 노래방기기를 판매, 설치하였으나 위 노래방기기의 결함으로 원고의 사업이 중단되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영업손실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제품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을 부인했다.

⑤ 개발위험항변을 認定한 판례

(서울고법 91나 55669판결, 1992. 5. 12선고)

원고는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急性腦膜下血症이라는 重病 腦損傷으로 인해 뇌 부종이 생겼고 그 때문에 腦壓이 상승하고 腦膜이 破裂되며 腦髓液과 血液이 腦表面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危重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치료 담당 의사는 뇌壓降下와 腦機能保護를 위해서 피고 製藥會社가 제조하고 병원에 공급한 솔루메드롤(Solumedrol)이라는 스테로이드劑를 원고에게 2차에 걸쳐 投藥했다. 퇴원 후 원고는 독일

유학 중 다시 오른쪽 大腿部無血壞死症으로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 증상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과 국내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劑의 長期投藥이 이 증세의 원인 중 하나로 의학계에서 주장되는 것을 알았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지시, 경고 결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위약품은 제조 당시의 醫療器術水準에 적합한 제반 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쳤고 發賣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제품설명서에 위 약품에 대한 당시 의학계에 알려진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제조회사는 지시설명무와 경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부인했다.

⑥ 製造物責任訴訟에 대한 外國法院의 裁判管轄權을 否認한 판례

(대법원 93다 39607, 1995. 11. 21 선고)

우리 나라에서 제조·수출한 전화기를 사용 중 그 缺陷으로 인해 鼓膜이 破裂된 미국인 소비자가 국내 제조자와 미국 수입상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원고와 그의 보험자는 우리 나라 법원에 이 확정판결의 執行判決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미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갖기 위해서는 피고회사가 손해발생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豫見할 수 있는 實質的 關係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實質的 關係는 피고가 손해발생지에서 利益을 享有하려는 意圖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미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므로 실질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 법원의 裁判管轄權을 부인하면서 집행판결을 기각했다.